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8조(물류현황조사지침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,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9조(지역물류현황조사 등) ① 시 · 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·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, 물류시설 · 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,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6. 9.>

② 시 · 도지사는 관할 시 · 군 및 구(지방자치단체인 시 · 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 · 군 · 구"라 한다)의 시장 · 군수 및 구청장(이하 "시장 · 군수 · 구청장"이라 한다),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· 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(이하 "지역물류현황조사"라 한다)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시 · 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,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.<개정 2013. 8. 6.>

제10조(물류개선조치의 요청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· 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(이하 "국가물류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· 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· 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 ·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(이하 "국가물류정책위원회"라 한다)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 · 시행

제11조(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2. 6., 2013. 3. 23.>

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2. 6. 1., 2013. 8. 6.>

1.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
2.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
- 2의2.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
3. 운송 · 보관 · 하역 · 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 · 철도 · 해운 · 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 · 조정에 관한 사항